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228

발의연월일: 2025. 1. 3.

발 의 자:김영호·이수진·김동아

박용갑 · 신정훈 · 한민수

문대림 · 김문수 · 민병덕

김준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찰청 소속의 검사에게 체포·구속 • 압수·수색 및 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판사·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관련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이른바 '제식구감싸기'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7 등).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0조의7 및 제20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0조의7(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고위공직자범 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제200조의4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01조의3(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고위공직자범 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은 제201조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 3호의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0조의7, 제201조의3, 제2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200조의7(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련범죄를 수사
	하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제200조의4에도 불구하고 체포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의 수사처검사에게 신청하여야
	<u>한다.</u>
<u><신 설></u>	제201조의3(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련범죄를 수사
	하는 사법경찰관은 제201조에
	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
	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생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련범
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처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